

1 다음 중에서 보복운전의 원인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진로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다.
- ② 앞 차량이 끼어 든 경우 경음기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 ③ 내 차 앞으로 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
- ④ 앞차가 지연 출발할 때는 3초 정도 배려한다.

해설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진로 변경 때 방향지시등 켜기, 비상점멸등 켜주기, 양보하고 배려하기, 지연 출발 때 3초간 배려하기, 경음기 또는 상향 전조등으로 자극하지 않기 등이 있다.

2 다른 운전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조치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맞대응하지 않기
- ② 손들어 소통하기
- ③ 차로에 정차한 상태로 시시비비 가리기
- ④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하기

해설 보복운전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조치 방법은 눈 맞추고 인사하기, 손들어 소통하기, 속도를 줄이고 비상점멸등 켜기, 뒤따라가지 않기, 맞대응 않기, 하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하차하지 않기, 창문을 조금만 내리고 침착하게 말하기, 112에 신고하기,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하기 등이 있다.

3 다음 중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 ① 120에 신고한다.
- ② 112에 신고한다.
- ③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신고한다.
- ④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한다.

해설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112, 사이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에 신고하면 된다.



4 보복운전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은?

- ① 가능한 직접대응을 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정차 후 112에 신고한다.
- ② 상대 운전자와 큰 소리로 시시비비를 가린다.
- ③ 상대방을 무시하고, 과속을 하여 최대한 빨리 벗어난다.
- ④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해설 보복운전 위험에 처하면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으로 흥분된 상태이므로 잠시 운전을 멈추고, 위험한 경우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5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설**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흥기 등 협박)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들이받아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설**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흥기 등 협박)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8 상대 차량이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앞지르기하여 가로막아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5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 의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재물손괴 등이 발생한 경우(보복운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다음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경우
- ③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서 양보하지도 않고 천천히 주행하는 경우
- ④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차가 전조등의 상향등을 켜고 운행하는 경우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은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비상점멸등을 켜거나 전조등의 상향등을 켜야 한다(긴급자동차 준수사항 :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점멸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0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②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③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④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신설 2015.8.11., 2016.2.12. 시행)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11 승용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범칙금 6만원의 통고처분을 받는다.
- ②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 ③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및 동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8.11신설, 2016.2.12 시행)



12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신호위반을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 ② 고의로 자동차를 급제동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
- ③ 차가 없는 도로에서 1회 중앙선 침범을 한 운전자
- ④ 안전지대에 정차한 운전자

해설 고의로 자동차를 급제동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한다.

13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 ① 난폭운전을 하면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을 받는다.
- ② 난폭운전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③ 난폭운전을 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난폭운전을 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동법 제73조제2항·제93조제1항·제151조의2에 의하여 난폭 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8.11신설, 2016.2.12 시행)

14 자동차등을 운전 중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난폭 운전자를 따라가며 경고한다.
- ② 난폭 운전자의 길을 막고 사과를 요구한다.
- ③ 난폭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한다.
- ④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을 중지시킨다.

해설 난폭 운전자를 목격하면 직접 대응하지 말고,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경찰에 신고 하는 것이 좋다.

15 다음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 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 ②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및 속도 위반을 연달아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 ③ 대형 트럭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특정 차량 앞으로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한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 ④ 버스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해설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운전행위로 불특정인에 불쾌감과 위협을 주는 행위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복운전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피해자 차량을 밀어 붙여 추락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본다.
- ② 위 ①항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본다.
- ③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차를 손괴한 경우 보복운전으로 본다.
- ④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고의가 분명하고 사고의 위험과 위협의 정도가 인정되더라도 단 1회의 행위는 보복운전이 아니다.

해설 단 1회의 행위라도 건전한 사회상규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고의가 분명하고 사고의 위험과 위협의 정도가 인정된다면 보복운전이라 할 수 있다.



17 일반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 ② 중앙선 침범, 급제동금지 위반
- ③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 ④ 일반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신설 2015.8.11., 2016.2.12. 시행)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18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음의 난폭운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다.
- ②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면서 속도를 위반하였다.
- ③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제동을 반복하였다.
- ④ 속도를 위반하여 앞지르기하려는 차를 방해하였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신설 2015.8.11., 2016.2.12. 시행)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19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로 틀린 것은?

- ①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 ②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 ③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④ 통행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신설 2015.8.11., 2016.2.12. 시행)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20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4차로 일반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매시 100킬로미터로 주행하면서 앞서 가는 화물차에게 경음기를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 ② 편도 4차로의 일반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하는 행위
- ③ 경음기를 반복하여 울리는 행위
- ④ 매시 100킬로미터로 주행하는 행위

해설 안전띠 미착용(도교법 제50조: 승용자동차 범칙금 3만원), 편도 4차로 일반도로의 승용차 주행차로는 1, 2차로, 경음기를 반복하여 울리는 행위(도교법 제49조제8호 다목: 승용차 범칙금 4만원 또는 46조의3[시행일 : 2016.2.12.]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151조의2), 과속 행위 도교법 제17조 제3항 20km/h 이하 승용차 범칙금 3만원)